범죄 피해자 기본 권리

범죄 피해자로서 귀하에게는 [RCW 7.69.030](https://apps.leg.wa.gov/rcw/default.aspx?cite=7.69.030)에 명시된 특정한 권리가 있습니다.

**(1)** 폭력 또는 성범죄 피해자에 관하여, 법 집행관에게 범죄를 신고할 때 이 장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을 권리. 해당 서면 진술서에는 카운티 또는 범죄 피해자/증인 프로그램이 해당 카운티에 존재하는 경우, 지역 범죄 피해자/증인 프로그램의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;

**(2)** 피해자, 생존자 또는 증인이 연관된 사건의 최종 처분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로부터 통보받을 권리;

**(3)** 불필요한 법정 출두를 방지하기 위해, 소환된 법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소환장을 발부한 당사자로부터 통보받을 권리;

**(4)** 법 집행 및 기소에 대한 협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피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, 그리고 이용 가능한 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;

**(5)**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증인 수수료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;

**(6)**  언제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,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 및 피고의 가족 또는 친구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안전한 대기 장소를 제공받을 권리;

**(7)** 도난당한 물품이나 기타 사유 재산이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을 때 법 집행 기관이나 상급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반환받을 권리. 가능한 경우, 흉기, 화페, 밀수품, 증거 분석 대상 물픔 및 소유권 논란이 있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사진을 찍은 후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;

**(8)**  피고용인의 임금 손실 및 법정 출두로 인한 기타 이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, 피해 생존자 및 범죄 목격자가 형사 사법 절차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용주 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;

****

 **(9)** 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고, 이러한 지원을 받기 전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긴 시간 동안 구금되지 않을 권리. 단, 법 집행 기관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의료 시설에 동행하여 의료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. RCW [**49.76.020**](http://app.leg.wa.gov/RCW/default.aspx?cite=49.76.020) 에 정의된 가정 폭력,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는 RCW [**49.76**](http://app.leg.wa.gov/RCW/default.aspx?cite=49.76)장에 따라 직장으로부터 합당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합니다;

**(10)** 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에 관하여, 범죄 피해자/증인 프로그램의 범죄 피해자 옹호자 또는 피해자가 선택한 기타 지원인이 피해자의 모든 검찰 또는 변호 인터뷰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법 절차에 참석할 권리. 이 항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범죄 피해자 옹호자 또는 지원인의 입회가 사건의 조사 또는 기소에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범죄 피해자 옹호자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;

**(11)** 피해자 및 피해 생존자에 관하여, 재판 중에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권리, 또는 증언을 위해 소환되는 경우, 증언 후에 재판에 참석하고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법적 절차에서 조기에 일정을 잡을 권리;

**(12)** 피해자 및 피해 생존자에 관하여, 피해자 또는 생존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 및 중죄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 공판의 날짜, 시간 및 장소를 해당 검사로부터 통지받을 권리;

**(13)** 필요한 경우 검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판결전 법정 보고서에 포함되고 주 기관 또는 시설에 가해자를 수감하는데 제공된 모든 파일 및 기록에 영구적으로 포함되는 피해자 피해 진술서 또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권리;

**(14)** 피해자 및 피해 생존자에 관하여, 중죄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; 그리고

**(15)** 피해자 및 피해 생존자에 관하여, 가해자가 수감 판결을 받더라도, 법원의 판단 아래 배상이 적절치 않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중죄 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배상 명령을 제기할 권리.